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비심사보고서

1993. 12.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 199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 비 심 사 보 고

1993. 12. 17

교육사회위원회

#### 1.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보사환경국소관
- 가정복지국소관

#####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료보호기금운영관리

#### 2.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2월 15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 일자 : 1993년 12월 16일

다. 상정 일 자: 제 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93. 12. 16)

-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93.12.16) 상정, 질의답변(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의결.

### 3.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가.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 (국소관별)

(단위 : 백만원)

국소관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합 계	45,832	100	46,988	100	△ 1,156	△ 2.5
보사환경국	26,895	58.7	27,131	57.7	△ 236	△ 0.9
가정복지국	18,937	41.3	19,857	42.3	△ 920	△ 4.8

#### 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합 계	14,092	100	14,866	100	△ 774	△ 5.2
의료보호기 금운영관리	12,058	85.6	12,832	86.3	△ 774	△ 6.0
대청호특별 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 설운영관리	2,034	14.4	2,034	13.7	-	-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별 첨

#### 5. 예산안 주요 문제점

이번 예산안은 '93년도를 정리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과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감액되는 예산은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계상에 정확을 기하여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으며,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6. 예비심사 결과

○ 참석위원 만장일치(참석위원 5인, 찬성 5인) 원안 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 ※ 첨부서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 사 환 경 국 소 관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993. 12.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1.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2.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

- 세항별 내역

## 3. 참고 자료

- 국고보조금 내역

# 1.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333,963	100	333,182	100	780	0.2
기본적경비	56,026	16.8	55,308	16.6	716	1.3
인 건 비	30,260	9.1	30,511	9.2	△ 252	△ 0.8
관서운영비	13,935	4.2	13,925	4.2	10	0.1
기본경상비	11,831	3.5	10,872	3.2	959	8.8
사 업 비	193,908	58.0	193,132	57.7	776	0.4
경상사업비	14,017	4.2	13,059	4.0	958	7.3
주요사업비	179,891	53.8	180,073	54.0	△ 182	△ 0.1
기 타 경 비	84,029	25.2	84,742	25.4	△ 713	△ 0.8

※ 충청북도 일반회계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31억 8천 2백만원에 비하여 0.2%에 해당하는 7억 8천 만원이 증가된 3,339억 6천 3백만원의 규모임.

○ 보사환경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26,895	100	27,131	100	△ 236	△ 0.9
기본적경비	3,504	12.9	3,508	12.9	△ 4	△ 0.1
인 건 비	2,018	7.4	2,018	7.4	-	-
관서운영비	761	2.8	761	2.8	-	-
기본경상비	725	2.7	729	2.7	△ 4	△ 0.5
사 업 비	20,708	76.7	20,792	76.7	△ 84	△ 0.4
경상사업비	840	3.2	846	3.2	△ 6	△ 0.7
주요사업비	19,868	73.5	19,946	73.5	△ 78	△ 0.4
기 타 경 비	2,682	10.4	2,831	10.4	△ 149	△ 5.3

※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19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 예산액 271억 3천 1백만원에 비해 0.9%에 해당하는 2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된 268억 9천 5백만원의 규모임.

## 2. 예산개요및 검토의견

1993년도 제3회 보사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339억 6천 3백만원중 268억 9천 5백만원의 규모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소관의 기정예산액 271억3천1백만원에 비해 0.9%에 해당하는 2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예산안 내용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증진사업비는 5개 사업에 대하여 9천 1백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분관 사무실임차                      3천 5백만원
- 정신질환시설 취사기구 구입비                                      3천 4백만원

을 제외하면 사업변동 및 국비의 추가 또는 감액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둘째, 영세민보호 사업비는 9개 사업에 대하여 1억 9천 6백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전 사업이 국고 추가내시 및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로 7억 8천 2백만원은 적절히 계상되었고, 기타 감액된 사업도 사업실적 정산에 따라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음.

셋째, 의료보험 부담금은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조정에 따라 감액계상되었으며,

넷째, 부랑인보호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부랑인보호시설 생계비, 시설운영비 등이 보사부에서 증액내시  
된데 기인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보건의원 사업비는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보건진료원 교육비로 1천 4백만원  
이 계상되었으나 교육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는 등 기타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에 따른 예산도 대상자 부족분이 감액계상  
된 것으로 적절히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여섯째, 환경관리사업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환경보전홍보와 감시장비 및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 계상  
계상되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정산과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감액되는 예산은 향후 계획수립 및 예산계상에 정확을 기하여 불필요  
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Ⅱ .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1. 예산 총괄

### ○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12,058	100	12,832	100	△ 774	△ 6
사업외수입	2,679	22.2	2,857	22.3	△ 178	▲ 6.2
보조금	9,379	77.8	9,975	78.3	△ 596	▲ 5.9

### ○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경비별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12,058	100	12,832	100	△ 774	▲ 6.0
소계	155	1.3	176	1.4	△ 21	▲ 11.9
기금운영비	80	0.7	103	0.8	△ 23	▲ 22.3
사무비	75	0.6	73	0.6	2	2.7
의료보호비	11,675	96.8	12,420	96.8	△ 745	▲ 6.0
예비비	228	1.9	236	1.8	△ 8	▲ 2.9

## 2.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28억 3천 2백만원 보다 6%인 7억 7천 4백만원이 감액된 120억 5천 8백만원의 규모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 세입에 있어서는

- 전입금이 1억 4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보사부에서 유보 국고보조금 (10%)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도비 부담금을 감액계상한 것임.
- 잡수입은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시군 '92년 결산반환금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금이자와 의료보호비 부당청구액 환수금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5억 9천 6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전체 사업비의 유보금액 10% 범위내에서 감액내시된데 기인하고 있음.

### ○ 세출에 있어서는

- 기금운영비는 2천 3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는 계획변경에 따라 감액계상되었으며,
- 사무비는 2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요양기관 현지확인 여비로 계상되었음.

- 의료보호비는 7억 4천 5백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으로, 세입에서와 같이 국비보조 및 도비부담금 감액에 따라 도 유보분 진료비 감액과 대불금 수요 감소에 따라 진료비로 증액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감액계상한 것임.
- 예비비는 7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음.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와 사업변경에 따라 계상된 것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가 정 복 지 국 소 관  
1993년도제3회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993. 12.

교 육 사 회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1.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

##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 감	
		%		%		%
계	333,963	100	333,182	100	780	0.2
기본적경비	56,026	16.8	55,308	16.6	716	1.3
인 건 비	30,260	9.1	30,511	9.2	△ 252	0.8
관서운영비	13,935	4.2	13,925	4.2	10	0.1
기본경상비	11,831	3.5	10,872	3.2	959	8.8
사 업 비	193,908	58.0	193,132	57.7	776	0.4
경상사업비	14,017	4.2	13,059	4.0	958	7.3
주요사업비	179,891	53.8	180,073	54.0	△ 182	0.1
기 타 경 비	84,029	25.2	84,742	25.4	△ 713	0.8

※ 충청북도 일반회계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31억 8천 2백만원에 비하여 0.2%에 해당하는 7억 8천 만원이 증가된 3,339억 6천 3백만원의 규모임.

○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경 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감	
		%		%		%
계	18,937	100	19,857	100	△ 920	△ 4.8
기본경상비	986	5.2	986	5.0	-	-
인 건 비	578	3.1	578	2.9	-	-
관서운영비	259	1.4	259	1.3	-	-
기본경상비	149	0.7	149	0.8	-	-
사 업 비	17,951	94.8	18,871	95.0	△ 920	△ 5.1
경상사업비	506	2.7	513	2.6	△ 7	△ 1.4
주요사업비	17,445	92.1	18,358	92.4	△ 913	△ 5.2
기 타 경 비	-	-	-	-	-	-

※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억 5천 7백만원에 비해 4.8%인 9억 2천만원이 이 감액된 것으로 189억 3천 7백만원의 규모임.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계상되어 중앙부처의 계획변경과 정산결과에 따라 국비감액내시로 피동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보은군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에대한반대건의문(안)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사회부, 환경처장관님께 !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근자에 언론(한국일보 11월 12일자 27면)을 통하여 거론된 것처럼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입지타당성 조사를 본도의 보은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충청북도의회 전의원의 명의로 반대의 뜻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내용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된 모순점을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제시하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 입니다.

첫째, [ 생명의 원천인 물에 관하여 ]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며 그것도 국가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서울 시민의 상수원인 남한강의 상류이며 청주, 대전 등 충청북도·시민의 젖줄인 대청댐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보은에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선적 난관을 해결키위해 대다수 국민과 국가 장래의 운명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둘째, [ 역사적 시련과 소외감에 관하여 ]

우리 150만 충청북도민은 산 좋고 물 맑은 청풍명월의 고장에 태어나 살고 있다는 긍지 속에서 타지역에 비하여 여러가지로 낙후된 가운데서도 자연보존을 위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시책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사실 보은을 비롯한 우리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삼국시대의 접경지역으로의 시달림, 동학운동의 와중에서의 고충과 일제치하에 의로운 선열인 의사, 열사들의 뜻을 이은 항일운동에 앞장섬은 물론이고 6.25의 격전속에서 살아남아 보리고개를 넘기위해 가족계획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좁디좁은 충북땅에서 그것도 25.6%나 우리 지역은 물론이지만 대부분 타지역을 위해 수질보존, 상수원 보호, 그린벨트 등으로 발육여 있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기후변화와 각종 사고에 시달려 살아왔으며, 그와 더불어 국가시책인 가족계획에 따르다 보니 전국 최하의 낙후지역으로 대전시 인구밖에 되지 않아 중앙의 지원비율의 불이익, 각종 정치공약 등에서도 소외받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물며 낙후되다 보니 농·축산업 중심의 생활기반인 우리 도민은 U.R의 여파로 고향을 떠나고 싶어도 부동산 매매 (금지에 가까운) 억제에 떠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추의 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셋째 [ 법적시책의 모순에 관하여 ]

현행 폐기물 처리법상 "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있다"라고 법에 규정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 밀집된 공업단지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그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발생 공장이 없는 농촌지역인 보은군에 버린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처사이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절대 반대합니다.

한편 환경처의 1990. 7. 19일자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르면 충북의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 회남면, 회북면, 옥천군 안남면(갈치리를 제외한 전역), 안내면, 군북면, II 권역으로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등이 대청호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되어 이 대책으로 현재 2등급 수질을 1등급 수질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특별종합 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해당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이 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함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항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생략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폐기물 처리장이 이곳에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능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넷째 [ 환경관리공단의 용역회사의 타당성 조사 내용에 관하여 ]

특히 보은읍 용암지역은 협소한 산간지역으로서 경사가 급한지역이며 토질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투수성이 강하여 누출수가 생기면 금강수계인 향건천, 불도천, 보침저수지와 대청댐을 오염시키고, 농경지 오염가중 뿐만아니라 내북면 등산리 지역 및 한강수계인 달천, 흑천오염 및 창리, 등산, 성암리 등의 식수원오염은 물론이고 내북면과 청원, 과산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인데도 지난 15일 대전 여성회관에서 배부된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설명회 자료 책자에 의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우에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형식적이고 신빙성이 없는 타당성 검사라고 사료 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 가. 6개 후보지 세목현황 조사요지(37항)의 보은군 용암리 교통편을 보면 보은읍에서 25번 국도로 3km 진행후 우회전 하다가 3km로 되다 있으나 25번 국도 8km가 정상이며 보은읍에서 중초리를 경유 내북면 이원리에 이르는 군도가 있어 보은읍 소재지에서 용암리 까지의 직선 거리는 불과 4km정도의 편리한 군도가 있음.

- 나. 입지여건의 인근에 주민은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근에는 용암리 후산(후보지)과는 약 300m 정도의 거리이며, 용암리 주민만 하더라도 70여호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음)
- 다. 인접권에 남한강 수계로 조사 되었으나 사실은 금강 수계가 확실합니다. 수계조차 모르고 용역 조사한 대우엔지니어링 조사는 불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라. 6개 후보지 위치도 43항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도면은 병원리인지 용암리인지 위치가 불분명함.
- 마. 장점란에 기존매립장 옆 기반시설 존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장과 기반시설이 있어 장점이 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앞으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바. 끝으로 중부권 후보지 선정에 있어 후보지중 충남 공주군과 태안군 그리고 충북 보은군내에 2개소를 선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용역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의 조사 착오가 아닌가 생각되어 정확한 조사가 요구되며,  
특히 보은군에는 국립공원 속리산과도 인접되어 있어 천혜의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소외받은 도민중에서도 한 맺힌 농촌지역으로 극단적 행위도 불사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깊이 성찰하시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